

NEWSLETTER

September 2023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

Data Privacy & Cybersecurity Group

CONTACT



변호사 박광배

T: 02,772,4343
E: kwangbae.park@leeko.com



변호사 윤종수

T: 02,6386,6601
E: jay.yoon@leeko.com



변호사 고환경

T: 02,2191,3057
E: hwankyung.go@leeko.com



변호사 채성희

T: 02,6386,6622
E: sunghye.chae@leeko.com



변호사 손경민

T: 02,772,4918
E: kyungmin.son@leeko.com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2023. 9. 15. 시행되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과 같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 도입하였으나 시행 시기가 2023. 9. 15.보다 늦은 조항에 관한 시행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의 다양한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고지 및 통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정비되었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출 통지·신고의무의 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종류 및 촬영사실 표시방법,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조치, 안전성확보조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시 매출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부과액 산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및 통지 규정 정비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 (영 제17조의2 제1항)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의 일환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단독 규정인 제2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불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들을 규정하였습니다.

■ 추가적 이용·제공의 공개 규정 정비 (영 제14조의2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고려사항에 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행령 하에서는 모든 경우 그러한 공개가 요구되었으나, 개정 시행령 하에서는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출처,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정비 (영 제15조의2, 제15조의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는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따라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만 부과되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과되며(법 제20조의2), 개정 시행령에 그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의무에 관한 규정도 정비되었습니다.

2. 유출등 통지·신고 의무 정비 (영 제39조, 제40조)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를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의무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 제34조). 특히 개정 시행령은 통지·신고 기한을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72시간 이내로 정하고,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세부 사항 규정 (영 제31조의2)

법 제30조의2 신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4.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정비 (영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규제 절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질화(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2)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고(법 제43조 제3항), 분쟁조정위원회가 자료 요청 및 사실조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법 제45조). 개정 시행령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분쟁조정 불응 절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열람 절차, 조정안 거부 절차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5. 제재(과징금, 과태료) 규정 정비 (영 제60조의2, 별표1의5, 제63조, 별표2)

법 제64조의2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과기준 등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75조 제5항 개정으로 과태료 감경 외에 면제 또한 가능해졌으며,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감면 시 고려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6. 안전성 확보조치 일원화 및 정비 (영 제30조)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의 일환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에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최신 보안기술, 인증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기술중립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 제22조 제1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6호)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 제3조 제2항, 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2조 제7호의2)의 유형을 (i) 착용형 장치, (ii) 휴대형 장치, (iii) 부착거치형 장치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방법(법 제25조의2 제3항)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규정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정비 (영 제29조의8 내지 제29조의12)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i)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호) 및 (ii)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5호)의 세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요구되는 보호조치(법 제28조의8 제4항)의 내용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 법에 신설된 국외이전 중지명령의 기준(법 제28조의9 제1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국외이전 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법 제28조의9 제2항)는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을 구성하여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문, 법적 조사 대응,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정 시행령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